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2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신흥식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특별휴가)제3항제9호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검토 결과

-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민원공무원 조례”라 한다)가 제정(2024.12.26.)되었음.
- 한편,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 2021. 03.18.)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집행기관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휴가(5일 이내)를 신설한 바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민원공무원 조례 제5조(지원사항)제4호에는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 조례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신흥식、전승관、김지연
이규선、이순우、정선희
의원 (6인)

1. 제안이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사
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안 제8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생 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휴가기간 및 절차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p> <p>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각 호와 같으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 휴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 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 을 수 있으며, 대상, 휴가기간 및 절차 등 휴가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